

운영위원회 규정



고양시테니스협회

www.goyangtennis.or.kr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2024. 03.26.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고양특례시테니스협회(이하 “테니스협회” 라 한다) 규약 제14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 적) 이 위원회의 규정은 테니스협회 이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반 현안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조정을 하며 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협회 운영의 조율 및 견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테니스협회 임원 및 사무국 직원, 지부 및 그 지부 산하 모든 조직의 임원 및 사무국장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 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 위원 5명 이상 11명 이하(위원장 포함)

제5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로 이사회가 위촉한다. 단 운영위원 3분의2이상 동의로 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테니스협회 임원(회장 제외) 및 고문, 자문위원, 대의원 중에서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이사회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규약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 위원 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이 당연직 간사를 맡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규약 제4조 및 제14조 사업에 관한 사항
- 사무국 운영(대회, 위수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규약 제5조 및 5조의 2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부의 안건 사전 심의 조정, 이사회 위임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에 규정된 심의 안건에 관한 사항
6. 예산수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후원금, 찬조금 등)
7.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8. 산하지부 업무 및 임원 변경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협회 운영 및 협회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운영 및 소집)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5.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열어야 하며, 운영위원 과반수 동의로 원격 회의(SNS 등)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테니스협회 이사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 위촉 등 의결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이사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2024. 0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차 이사회(2024.03.26.)의 의결에 따라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즉시 시행한다.

제2조(기타) 운영위원회 규정은 협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23년 11월 17일 고문, 자문위원, 협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체육회장이 합의한 내용(이하 11.17합의라 칭한다.)과 협회 규약을 근거로 마련한다. 11.17합의에 따라 회장의 모든 회무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위원회(조정위원회) 3인(김병섭 고문, 신상권 서구연합회장, 오영정 자문위원)이 협회 운영의 정상화까지 운영위원회를 이끌도록 하며, 이 같은 내용은 2024년 2차 이사회 의결로 재확인한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민선 3기 체제 전까지만 유효하다.